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이병진·조 국·송옥주

윤후덕 · 임호선 · 권칠승

한정애・박지원・이상식

전현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비무장지대(DMZ: demilitarized zone)는 그 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,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,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.

또한,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,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현재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등에서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임.

이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,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

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·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및 제8조).
- 다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9조).
- 라.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·운영을 추진하거나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마.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·시행할 수 있음(안 제17조).
- 바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 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,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

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,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8조 및 제19조).

법률 제 호

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·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원칙)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 - 1. 비무장지대에서의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의 추구
 - 2.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간 협력 도모
 - 3. 비무장지대에서의 국민의 생명·안전 보장 및 편의 제공
 - 4. 비무장지대에서의 자연환경 보전 및 문화재의 보존
- 5. 비무장지대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참여 증진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비무장지대(DMZ: demilitarized zone)"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」 제1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.
 - 2. "접경지역"이란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

역을 말한다.

- 3. "평화적이용사업"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단독, 남북 공동, 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평화 증진, 남북협력 증진, 자연환경 보전, 문화재 보존에 관한활동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의 책무)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 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간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주변국 및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④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,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비무장지대(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을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.
 - ② 다른 법률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.

제2장 계획의 수립

- 제6조(종합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
 - 2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
 - 3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필요한 조직과 재원에 관한 사항
 - 4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
 - 5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
 - 6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
 - 7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민들의 이해 및 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합계획 수립·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 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- 2.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
- 3. 관계 공공기관의 장
- 4.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교육 ·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
- ④ 통일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환경보전계획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있어 「환경정책기본 법」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 보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.
-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 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 -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-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

경우 계획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위원회 설치 등

- 제9조(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) ①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
 - 2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확정ㆍ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
 - ·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
 - 4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
 - 5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
 - 6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④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.
-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.
- 1. 당연직위원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
- 2. 위촉위원 :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
- ⑥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,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,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) ①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그 밖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

- 제11조(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)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(이하 "지구"라한다)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·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지구를 지정·조성 및 운영함에 있어서 비무장지대의 환경 및 문화재 보전, 남북협력 증진,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지구 지정·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실태조사)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하여 역사, 문화, 환경, 생태, 산림, 토지 이용 등에 관하여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

- 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전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정부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문화유산 등의 국외 선양 지원)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대환경 및 문화적·역사적 유산을 보존·관리하고 그 가치를 국 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비무장지대의 문화유산 등의 국외 선양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지원)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비무장지대에서의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비무장지대 내 지뢰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있다.
- ③ 그 밖에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안전 및 출입을 위한 지원)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·장비의 반입·출입이 필요한 경우,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남북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·통행에 필요한 도로, 철도, 통신 등의 기반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④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북한주민에 대한 지원) ① 정부는 북한주민이 비무장지대의 보 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을 방문할 경우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방문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그 밖에 북한주민의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 방문에 필요한 절차 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)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·시행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은 생태·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범위·종류 및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
 - ② 통일부장관 및 관계 시·도지사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통일부장관 및 관계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9조(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,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재정지원)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을 위하여 「남북협력기금법」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 - ③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이용사업과 연계되어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21조(추진기관의 지정)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 적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(이

- 하 "추진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
- 2. 평화적이용사업 시행자에 대한 운영 지도 및 감독
- 3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학술·연구·출판 지원
- 4. 비무장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
- 5.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
- 6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내외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 지원
- 7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
- 8.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 지원
- 9.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추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
- ③ 통일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- ④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사업의 시행 등

제22조(사업시행자)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

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정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
- 6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
- 제23조(사업의 시행승인) ① 통일부장관(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)은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 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기밀에 관한

사항 및 남북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.

-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.
- 1.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
- 3.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⑥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그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사업시행 신청 및 승인, 취소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토지 등의 수용·사용) ① 국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토지·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토지 등의 수용·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

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.

제6장 벌칙 등

- 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①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「형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② 추진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127 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26조(벌칙)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재 정적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군사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 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 -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